#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324

발의연월일: 2020. 7. 23.

발 의 자: 안호영·송옥주·최종윤

양이원영 · 장철민 · 노웅래

윤미향 • 아주진비) • 김철민

김윤덕 · 임종성 의원

(11일)

### 제안이유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을 보호하고 급속한 고령화와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기존 퇴직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하되,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가 큰 대규모 사업장부터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도입토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은퇴 이후의 노후소득재원인 퇴직연금을 확충하고자 함.

또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30인 이하 중소영세기업에 근로하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후생활 보장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을 통한 가입유도, 합리적인 공적 자산운용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아울러, 중도인출제도 남용으로 소중한 노동자의 노후소득재원이 고 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도인출 사유 이외에 한도를 제한하는 등 중도인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 착 및 발전을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등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안 제4조, 제11조 및 부칙 제2조)
  - 1) 현재는 퇴직연금제도 대신 퇴직금제도 설정이 가능하여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실정이며,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은 중소사업체일수록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낮아 기업 규모간 노후소득 보장 격차가 지속되고 있음.
  - 2) 이에, 퇴직연금제도 설정을 의무화하고 기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의무화하되 중소·영세기업사용자의 부담을 감안하여 기업 규모별로 법 시행일 이후 6년 6개월까지 단계적(5단계)으로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을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음.
-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의 사용자에게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위원회를 통해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등을 정한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여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도모하였음(안제18조의2).

- 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남용으로 인한 노동자의 노후소득재원 감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도인출 시 사유뿐 아니라 적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적립금이 인출될 수 있도록 중도인출제도를 개선하였음(안 제22조 및 제24조제6항).
- 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안 제4장의2)
  - 1) 그동안 중소·영세기업은 재정 및 행정적 부담 등으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애로가 있어 중소·영세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이 미흡한 문제가 있었음. 이에 근로복지공단이 30명 이하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 재정지원을 통한 가입유도, 합리적인 공적 자산운용 및 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2) 근로복지공단에 기금제도운영위원회를 두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등으로 구성토록 함(안 제23조의2).
  - 3)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 혹은 의견을 들어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을 체결토록 함(안 제 23조의6).
  - 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토록 하고 사

용자가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연이자를 납입토록 함(안 제23조의7).

- 5) 사용자부담금 외에 가입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 추가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토록 함(안 제 23조의8).
- 6)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와 가입자별 운용현황을 가입자에게 제공토록함(안 제23조의10 및 제23조의11)
- 7) 국가는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23조의14).
- 마.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사용자의 가입자 교육 위탁 기관을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에 전문교육기관을 포함시키고, 전문교육기관의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제2항·제3항).
- 바.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도록 함(안 제33조제9항).
- 사.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에 대한 지원,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등 정

부의 책무를 강화함(안 제34조제2항).

아.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에게 알려주고, 사용자는 법적 최소적립금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8조제1항제1호·제2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퇴직급여제도"로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퇴직연금제도의"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퇴직급여제도"를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의견을들어 퇴직급여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를 "사용자가"로,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를 "근로자대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사용자가"를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정되거나"로, "설정되거나 변경된"을 "변경된"으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급여"를 "급여(제11조제1항에 따른 일시금은 제외한다)" 로, "양도하거"를 "양도 또는 압류하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로 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퇴직금"을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시금"으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부담금 및 미납입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퇴직금"을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시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를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를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폐지·중단"을 "폐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제14조제2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 중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본문 중 "계정"을 "계정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계정"을 "계정등"으로, "해당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을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3장에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운용계획서는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를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를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담금의"를 "부담금의 산정 및"으로 한다.

제22조 중 "사유가 발생하면"을 "사유와 한도에 따라"로 한다. 제4장의2(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16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다.
  -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퇴직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각 호의 위원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같아야 한다.
  - 1. 공단의 상임이사
  -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 4.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
  - 2.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변

경에 관한 사항

- 3.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료 수준
-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⑦ 위원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 등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⑧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공단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야 한다.
- 제23조의4(자료의 활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 업무
  - 2.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사용자 및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이 제23조의14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퇴직연금규약신고, 제38조에 따른 퇴직연금 규약 폐지 신고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제13조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 2.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 3.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업무에 관한 사항
  - 4.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업무에 관한 사항
  - 5.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급여의 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는 내용이 가입자 및 사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할수 있다.

-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① 중소기업의 사용자는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 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제23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3조의15제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③ 공단은 제23조의5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인적·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사용자부담금"이라한다)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계정(이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납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제20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납입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연이자에 대한 적용제외 사유는 제20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④ 그 밖에 부담금 납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렁하려는 사람
     사용자부담금 외에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 부담금(이하 "가입자부담
    - 금"이라 한다)을 납입하려는 사람
- 제23조의9(가입기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 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 은 해당 계정 설정일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때까지로 한다.
- 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

- 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가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 가입자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 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본다.
- 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의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본다.
  -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서 가입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 ③ 이 밖에 급여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립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4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① 국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에 따른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수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환수할 지원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3. 사용자가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 ④ 제3항에 따른 환수금은 공단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 징수를 위해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제23조의15(공단의 책무) ① 공단은 가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매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취급실적, 운용현황 및 수익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③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공단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은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내용"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는 "제23조의6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로 본다.
- 제23조의16(지도·감독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 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

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1.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 2.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제24조제2항제1호 중 "퇴직급여제도의"를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제11 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급요건 및 중도인출"을 "수급요건"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한도에 따라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제25조제1항 중 "제4조제1항 및 제5조"를 "제4조제1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계리(計理)"를 "회계 처리"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을 "확정급여 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을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포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변경"으로 한다.

- ③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 교육의 방법과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3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⑨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 사항을 약관등에 제정하여야 한다.

제3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노사단체, 퇴직연금업무 유관기관·단체와의 공동 연구사업 및 행 정적·재정적 지원

- 2.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 3. 건전하고 효율적인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육성 및 교재의 지원
- 4.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 제3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대상 및 내용, 평가 결과 공표 및 활용 등 평가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 의 설정 또는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기업퇴직연 금기금표준계약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 (퇴직급여제도의 폐지 시의 처리) 사용자가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퇴직급여제도를 폐지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제1항 중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을 "금융위원회, 금융감

독원장 또는 공단(제23조의14에 따른 지원 및 환수와 환수금 징수업무, 제3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43조 중 "3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제11조를 위반하여 일시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제20조제5항"을 "제20조제5항, 제23조의7제2항"으로 한다.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 4호 중 "제32조제3항제1호"를 "제32조제4항제1호"로 한다.

제46조제1호 중 "제4조제3항·제4항 또는 제2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를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또는 제25조제1항·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3조의14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제46조제3호 중 "제32조제4항"을 "제32조제5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 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표에게 알리지 아니 한 퇴직연금사업자
-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자
-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 제48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제4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른 확정기 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 4. 제3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제48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으 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퇴직금제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던 사업(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의 사용자는 제2조제6호, 제4조제1항 및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여야 한다.이 경우 새로운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기 전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퇴직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제1 1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한다.
  - 1.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이 법 시행일 이후 6개월
  - 2. 상시 30명 이상 1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이 법 시행일이후 2년
  - 3. 상시 10명 이상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이 법 시행일

이후 3년 6개월

- 4. 상시 5명 이상 1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이 법 시행일 이후 5년
- 5. 상시 5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이 법 시행일 이후 6년 6개월
-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한 퇴직급여제도의 가입기간을 변경 전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이 포함된 기간으로 설정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 ③ 제1항의 사용자가 해당 기간 내에 이 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3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기간 이후 최초로 제16조제2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 부족 해소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부터 적용한다.
-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 제16조의2제4항 단서 중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를 "않으면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시금을 회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로 한다.
  - ②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로 한다.

③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같은 법 제4장의2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중 "퇴직연금사업자"를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혀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 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 ----- 중소기업퇴직연 직금제도를 말한다. 금기금제도----.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 7. ----- 퇴직급여제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 도 -----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 도를 말한다. 8. ~ 12. (현행과 같음) 8. ~ 12. (생략)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 13. ---- 확정급여 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 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 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 연금제도에 대한 -----를 말한다. <신 설>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 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 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 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 제4조(퇴직급여제도 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 어를 지급하기 위하여 <u>퇴직급여 반수가 가입한 모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 경우에는 그 노동</u> 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 는 경우에는 근로 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 "근로자대표"라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들어 퇴직급여제도

## ② (생략)

- ③ <u>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u>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u>근로자의</u>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 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로자 과반수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
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퇴직
연금제도를 말한다.	
기(티키크시테트시 워키)	1

<u>근로자의 과</u>
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
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퇴직급여제도
<u>.</u>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대표
·

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 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

제5소(새도 성립된 사업의 퇴식급 여제도) 법률 제10967호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 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 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야 한다.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퇴직연금 지제도의 <u>급여</u>를 받을 권리는 <u>양도</u> <u>하거</u>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 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

<u>되거나</u> <u>변경된</u>
,
<u>&lt;</u> 삭 제>

제7조(수급권의 보호) ①
급여(제11조제1항에 따른
일시금은 제외한다) 양도 또는
<u>압류하거</u>
2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 연금사업자는 제공된 급여를 담 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 조하여야 한다.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 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 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 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 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 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 부터 새로 계산한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 | <삭 제> 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 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 제10조에 따른 근로복 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하다)-----

<삭 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u><신 설></u>

<삭 제>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① 제4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제도를설정하지 아니한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금은 근로 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 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 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 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 <신 설>

<신 설>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u>퇴</u>
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
항에 따른 <u>확정기여형퇴직연금</u>
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
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 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 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 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 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세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제11
조제1항에 따른 일시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
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 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 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 ② (생략)

- ③ 퇴직급여등 중 <u>퇴직금</u>, 제15 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 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 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u>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u>의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저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u>제4조제</u> 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1</u> 조제1항에
<u> 따른 일시금</u>
4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u>제4</u> 조제 <u>1</u>
항 또는 제3항

표의 <u>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 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 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 1. ~ 9. (생략)
- 10. 퇴직연금제도의 <u>폐지·중단</u>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u><신</u> 설>
- 11. (생략)
- 제14조(가입기간) ① (생 략)
  - ②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에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 제15조(급여수준)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u>30일분의</u>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 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 ③ (생 략)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
<u>.</u>
1. ~ 9. (현행과 같음)
10 폐지
10. <u>9   / 1</u>
10의2.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u> 관한 사항</u>
11. (현행과 같음)
제14조(가입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u>&lt;</u> 후단 삭제>
제15조(급여수준)
00AlH .l.l
<u>30일분 이상</u>
<u>의 평균임금</u>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개인 형퇴직연금제도의 <u>계정을</u> 지정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u>해당 퇴</u> <u>직연금사업자가 운영하는</u> 계정 으로 이전한다. <u>이 경우 가입자</u> <u>가 해당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개</u> 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 으로 본다.

<신 설>

(4)
<u>계정등</u>
5
<u>계정등</u> 을
근로자 명
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u>&lt;</u> 후단 삭제>

제18조의2(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①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 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의 합리적 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운용위 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자는 적립금운용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 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점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 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 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생략)
- 2. <u>부담금의</u> 납입에 관한 사항
- 3. ~ 7. (생 략)
- ② (생략)

제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확정기 저 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 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u>사유가 발생하면</u> 적립 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신 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립금운
용계획서는 적립금 운용 목적 및
방법, 목표수익률, 운용성과 평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을 포
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작성하여
<u>야 한다.</u>
∥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u>제4</u>
조제1항 또는 제3항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받아
1. (현행과 같음)
2. <u>부담금의 산정 및</u>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22조(적립금의 중도인출)
사유와 한도에 따라
제4장의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신 설>

- 제23조의2(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운영) ① 중소기업퇴직연 금기금제도는 공단에서 운영한 다.
  - ②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중소 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운영위원 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이사장으로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퇴직연금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일반직공무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수는 10명이상 15명이내로 구성하되,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수는 같아야한다.
  - 1. 공단의 상임이사
  - 2.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 3.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 4.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로서 퇴직연금 및 자산운용에 관한 학

<u>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u> <u>되는 자</u>

-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의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의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운용계 획 및 지침에 관한 사항
- 2.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업퇴 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3.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수수 료 수준
-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소기업퇴 직연금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관하여 운영위원 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① 위원장은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 운용 등과 관련하여 운영위 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 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⑧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신 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의 관리 및 운용) ①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안정적 운용 및 수익성 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 금을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 여야 한다.

제23조의4(자료의 활용)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원활히 수 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따라 수집된 자료를 활용할 수있다.

-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 입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 내 업무
- 2.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중 사용자 및 근로자의 편

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이 제2 3조의14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 여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퇴 직연금규약신고, 제38조에 따른 퇴직연금규약 폐지 신고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의5(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표준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한 계약서(이하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표준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 1. 제13조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 2.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사항
- 3.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 직연금기금의 관리·운용 업무 에 관한 사항
- 4.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

   관·통지 업무에 관한 사항

   5. 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

의 수령, 적립금의 보관 및 관 리, 급여의 지급 업무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중소기업퇴직연금기 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하는 내용이 가입자 및 사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은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신고함으로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23조의6(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설정) ① 중소기업의 사 용자는 제23조의5에 따른 중소기 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4 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근로 자대표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어 공단과 계약을 체결함으로 써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제23조의5제1항제3호 부터 제5호까지 및 제23조의15제 1항의 업무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③ 공단은 제23조의5제1항제3호 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인적・ 물적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의7(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 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이하 "사용자부담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계정(이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중소기업퇴직연금기급기금표준계약서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

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제20조제 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중소기업퇴직연금 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과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 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 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연이자에 대한 적용제외 사유는 제20조제 4항을 준용한다.

④ 그 밖에 부담금 납입과 관련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23조의8(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의 설정

<신 설>

<u><신</u>설>

-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의 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명의의 부담금 계정(이하 "기금 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이라 한 다)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가입자의 기금제도사용 자부담금계정과 구분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 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려는 사람
- 2. 사용자부담금 외에 자기의 부 담으로 추가 부담금(이하 "가입 자부담금"이라 한다)을 납입하 려는 사람
- 제23조의9(가입기간)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금제도가입자 부담금계정은 해당 계정 설정일 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때까지 로 한다.
- 제23조의10(기금 운용정보 제공)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

<신 설>

금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 및 손실 가능성 등의 정보를 가 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3조의11(운용현황의 통지) 가입 자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 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본다.

- 제23조의12(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 건 등) 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의 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본다.
  -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②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서 가입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 금제도의 계정등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신 설>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입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③ 이 밖에 급여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13(적립금의 중도인출) 중 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적립 금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기금제도사용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 금제도"로 본다.
- 2.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에 관하여는 제24조제6항을 준용 한다. 이 경우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 금제도"로 본다.

제23조의14(국가의 지원) ① 국가 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 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 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

는 경우 사용자부담금, 가입자부 담금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 금제도 운영에 따른 비용의 일부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 수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환수할수 있다. 다만, 환수할 지원금액(이하 "환수금"이라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3. 사용자가 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폐지한 경우
- ④ 제3항에 따른 환수금은 공단

<u><신 설></u>

- 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⑤ 공단은 제3항에 따른 환수금 징수를 위해 「지방세법」에 따 른 재산세 과세자료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련 전산망의 이용을 관계 기관 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제23조의15(공단의 책무) ① 공단은 가입자에 대하여 중소기업퇴 직연금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공단은 매년 중소기업퇴직연 금기금제도의 취급실적, 운용현 황 및 수익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 다.
  - ③ 공단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

금표준계약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 및 가입자에게 그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단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제33조제1항부터 제4항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퇴직 연금사업자"는 "공단"으로, "제2 8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은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내용"으로, "제28조제1항에 따른 운용관리업 무의 수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 및 "제29조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계약 체결 을 거부하는 행위"는 "제23조의6 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행위"로 본다.

제23조의16(지도·감독 등) 고용노 동부장관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 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 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 정 및 운영 등)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개인형퇴직연금 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 1.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 | 1. 이 법에 따른 급여 또는 제11 령한 사람
-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 | 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 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 정하려는 사람
- 3. (생략)
- ③ ④ (생 략)
- ⑤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 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령 할 수 있다.
- 1. 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제도 관리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 2. 제23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퇴 직연금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 한 사항

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제24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설 정 및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 조제1항에 따른 -----
- 2.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 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중 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 3.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

의 종류별 <u>수급요건 및 중도인출</u>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①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 제4조제1항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②·③ (생 략)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의 체결) ① <u>퇴직연금제도를</u> 설정하려는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와 다음 각 호의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를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제2호의 업무는 확정급여형퇴직

⑥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
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한도에 따라 적립
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
제25조(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
에 대한 특례) ①
<u>제4조제1항</u>
②·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
의 체결) ① <u>확정급여형퇴직연금</u>
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u>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u> 를

----- 수급요건-----

연금제도를 설정할 때에만 해당 한다.

- 1. (생 략)
- 2.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 계리 (計理)
- 3. ~ 5. (생략)
- ② (생략)
- 제29조(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 / 7 의 체결) ① 퇴직연금제도를 설 정한 사용자 또는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자산관리업 무"라 한다)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퇴직연금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 1. ~ 6. (생략)
  - ② (생략)
-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① -----는 법령 및 퇴직연금규약을 준수 하고 가입자 등을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 실하게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 행하여야 한다.
  - ② 퇴직연금제도(개인형퇴직연 금제도는 제외한다)를 설정한 사 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 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

		•

- 1. (현행과 같음)
- 처리
- 3. ~ 5.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	자산관리	미업무여	] 관한	계약
의 체	결) ①	<u>확정급</u>	급여형퇴	티직연
금제!	E, 확정	기여형되	퇴직연금	금제도
또는	개인형	퇴직연·	금제도	를 설
<u>정하</u>	<u> ქ는</u>			

- 1. ~ 6.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법령,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소 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를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 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사용자는 <u>퇴직연금</u> 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 탁할 수 있다.

<u><신</u>설>

③ (생략)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4. (생략)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7 ①~⑧ (생 략)

<신 설>

<u>퇴직연금사업</u>
자 또는 전문기관
③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
건, 교육의 방법과 내용, 기타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u>다.</u>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제도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
도로의 변경
1. ~ 4. (현행과 같음)
제33조(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①~⑧ (현행과 같음)
⑨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① (생략)

②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건전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노사단체, 퇴직연금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연구사업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다.

<u><신 설></u>

운용방법을 제시하는 경우에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 사항을 약관등에 제정하여야 한다.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정부는 퇴직연금제도의 건전 한 정착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노사단체, 퇴직연금업무 유관 기관·단체와의 공동 연구사업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 2. 퇴직연금제도 운영과 관련한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 3. 건전하고 효율적인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육성 및 교재의 지원
- 4.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 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한 사항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대상 및 내용, 평가 결과 공표 및 활용 등 평가실시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③ (생략)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① 고 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퇴직 연금제도의 설정 또는 그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퇴직연 금규약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 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제38조(퇴직연금제도의 폐지・중 제38조(퇴직급여제도의 폐지 시의 단 시의 처리) ① 퇴직연금제도 가 폐지되거나 운영이 중단된 경 우에는 폐지된 이후 또는 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한다.

② 사용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 | 지된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조 치로서 미납 부담금의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령으로 정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5조(사용자에 대한 감독) 고용 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퇴직급 여제도의 설정 또는 그 운영 등 에 관하여 퇴직연금규약 또는 중 소기업퇴직연금기금표준계약서 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처리) 사용자가 폐업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한 사유로 퇴직급여제 도를 폐지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데 에 필요한 조치로서 미납 부담금 의 납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유 등으로 퇴직연금제도가 중단된 경우에 적립금 운용에 필요한 업무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적인업무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④ 사용자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가입 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 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 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제17조제5항을 준용한다.
- ⑤ 가입자가 제4항에 따라 급여 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중간정산되어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중간정산 대상기 간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저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그일부를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거나

제42조(권한의	위임	• 위	탁)	1		_
						-
						-
	금융	위원	회,	급	융 7	삵
독원장 또는	공단	<u> </u> (제:	23조	.의]	[4¢	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생략)

- 제43조(벌칙) 제37조제6항을 위반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3</u> <u>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1.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 2.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17조 제2항·제3항, 제20조제5항 또는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 3. 4. (생략)
-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만원</u> 이하의 벌금

따른 지원 및 환수와 환수금 징
수업무, 제34조제2항 각 호의 업
<u>무로 한정한다)</u>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벌칙)
<u>5</u>
- 천만원
제44조(벌칙)
3천만원
<del></del>
1. 제11조를 위반하여 일시금
2
제20조제5항, 제
23조의7제2항
3.·4. (현행과 같음)
제45조(벌칙)
E/
2천만원
<u>4 2 2 2 2 </u>

에 처한다.

- 1. ~ 3. (생략)
- 4. <u>제32조제3항제1호</u>에 따른 책 무를 위반한 사용자
-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제3항·제4항 또는 제25 조제1항 및 제2항제1호를 위반 하여 근로자대표 또는 개별 근 로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거 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사용자 <신 설>

- 2. (생략)
- 3.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 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퇴 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 용자
-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u>.</u>
1. ~ 3. (현행과 같음)
4. 제32조제4항제1호
제46조(벌칙)
<u>.</u>
1. <u>제4조제1항·제3항·제4항 또</u>
<u>는 제25조제1항·제2항제1호</u> -
1의2. 제23조의14제3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u>자</u>
2. (현행과 같음)
3. <u>제32조제5항</u>
제48조(과태료) ①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

다.

- 1.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

   자
- 2.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 연금사업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u>50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 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 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 2.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책 무를 위반한 사용자
- 3. 제33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신 설>

역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3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 ② ------ <u>1천만원</u> -----
-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적립 금이 최소적립금을 상회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 용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그 확인 결과를 근로자대 표에게 알리지 아니한 퇴직연 금사업자
-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적립금부족을 해소하지 아니한 사용<u>자</u>
- 3.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 <u>자</u>
- 4. 제3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퇴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연금사업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3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 직연금규약 또는 제19조에 따 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용자
- 1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적 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 1의3.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적 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용자
- 2. 제3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사용자
- 3. 제33조제2항에 따른 책무를 위반한 퇴<u>직연금사업자</u>
- 4. 제33조제6항에도 불구하고 퇴 직연금제도 취급실적을 제출하 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퇴직연금사업자
- 5. 제3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사용자
- <u>④</u> 제1항부터 제3항-----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